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697
----------	-------

발의연월일 : 2025. 7. 24.

발의자 : 윤영석 · 서천호 · 박상웅

임종득 · 김태호 · 김소희

박대출 · 이달희 · 우재준

강명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내국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 농어촌 소득 증대,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조세 지원 제도임. 그러나 최근의 경제 환경 변화와 산업 동향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으로의 기업 유치 및 기존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여전히 크며, 당초 목표한 정책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원 기간 확보가 요구됨.

또한,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의 이전 또는 신규 입주를 계획하는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데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행 기한으로는 충분한 유인책이 되기 어려운 측

면이 있음.

이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기업들의 안정적인 투자 및 입주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당초 제도의 취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함(안 제64조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p> <p>1. <u>2025년 12월 31일까지</u>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p> <p>2. <u>2025년 12월 31일까지</u>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p> <p>② ~ ⑨ (생 략)</p>	<p>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 ----- ----- ----- ----- ----- ----- ----- -----. 1. <u>2027년 12월 31일</u>----- ----- ----- ----- ----- ----- ----- ----- ----- ----- 2. <u>2027년 12월 31일</u>----- ----- ----- ----- ----- ----- ----- ----- ----- ----- ② ~ ⑨ (현행과 같음)</p>